

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변 호	29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9월 14일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및 권익 침해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납부 관람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 명시(안 제6조)

나. ‘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’ 소재지 주소 오류 정비 (안 제3조 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22. 7. 28. ~ 2022. 8. 17.

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
3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4) 신·구 조문대비표 : 별첨

5) 비용추계 등 자료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

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

6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: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액 반환한다.

1.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
2. 시설의 개보수,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으로 정상적인 관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

별표 1의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성북구 솔샘로7길 23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관람료) ①·② (생 략)	제6조(관람료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③ 삭 제	
<u><신 설></u>	<u>④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액 반환한 다.</u> <u>1.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</u> <u>2. 시설의 개보수, 이용자의 안 전 확보 등의 사유로 정상적 인 관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</u> <u>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 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 한 경우</u>

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자치법규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부분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문화체육과장 홍 지 현